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

제9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 -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
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나. 계약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
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다.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(2025년 기준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(단위 : 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월 한도액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○ 방문요양 급여비용(수가,원)

방문당 시간	총급여비용	본인부담(15%)	감경(9%)	감경(6%)
30 분	16,940 원	2,541 원	1,525 원	1,016 원
60 분	24,580 원	3,687 원	2,212 원	1,475 원
90 분	33,120 원	4,968 원	2,981 원	1,987 원
120 분	42,160 원	6,324 원	3,794 원	2,530 원
150 분	49,160 원	7,374 원	4,424 원	2,950 원
180 분	55,350 원	8,303 원	4,982 원	3,321 원
210 분	61,670 원	9,251 원	5,550 원	3,700 원
240 분	68,030 원	10,205 원	6,123 원	4,082 원

○ 방문간호 급여비용(수가,원)

방문당	총급여비용	본인부담 (15%)	감경(9%)	감경(6%)
15분이상~30분미만	41,710원	6,257원	3,754원	2,503원
30분이상~60분미만	52,310원	7,847원	4,708원	3,139원
60분이상	62,930원	9,440원	5,664원	3,776원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 수급권자	0%
60%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	6%
40% 감경대상자	9%

라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수급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본인부담금,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인적사항,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(3) 계약의 해제

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가)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

나)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다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라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